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권 영 숙 의원)

의안 번호	24-136
----------	--------

발의년월일 : 2024. 11. .

발 의 자 : 권영숙, 고병준, 권인순,
김승수, 백남환, 안미자,
오옥자, 한선미, 홍지광

1. 제정이유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자동차 안전점검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1조~제3조)
- 나. 지원대상자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다. 지원을 위한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라.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제8조(자동차안전점검)

4. 조 례 안 : 붙임

5.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6.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입법예고: 2024. 10.18. ~ 10 .25.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자동차 안전점검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자동차 안전점검"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의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 범위 내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자동차 안전점검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
2. 「장애인복지법」 제39조의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부착한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

제5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자동차 안전점검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동차의 경우에는 안전점검 및 정비를 제외할 수 있다.

1. 영업용 차량
2. 1톤 이상 화물차량
3. 대여 및 리스차량
4. 사회복지시설 차량

제6조(협약체결)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동차 안전점검을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 관리법」 제53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관리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환수 등)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장애인복지법

[시행 2024. 10. 22.] [법률 제20511호, 2024. 10. 22., 타법개정]

제39조(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이 이동수단인 자동차 등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하여 조세감면 등 필요한 지원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을 지원하는 데에 편리하도록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 볼 수 있는 표지(이하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 대상과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6. 7.]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1224호, 2019. 6. 7., 제정]

제8조(자동차 안전점검) ① 구청장은 구민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제5조(지원내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복지동행국 장애인사회보장과 강나은
연 락 처	02-3153-8873